

#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6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이나 타시도 인사를 적극 발굴 수여함과 동시에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참여, 협조를 유도코자 함

## □ 주요골자

가. 지금까지 수여대상이 충청북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 되어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선정 원칙과 기준을 정함 (조례안 제2조)

나. 대상자는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되, 필요시 유관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(조례안제3조)

다. 대상자 결정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심의후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도민으로서 긍지감을 갖도록 지역문화행사, 간담회등 각종 도정관련 행사시 초청 하는 등 대우기준을 마련함(조례안제4조제6조)

라.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원할때는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,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, 기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함(조례안 제7조)

붙임 1.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조례개정조례(안)

2. 구 조례

##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조례는 충청북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으로 충청북도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(이하 "명예도민증서"라 한다)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수여대상)**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시도 인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외국과의 자매결연,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
2. 장학재단 설립운영등 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
3. 불우이웃돕기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
4.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온 자
5. 기타 도, 시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

**제3조(대상자추천)** ① 수여대상자 추천은 시장·군수가 한다.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유관기관·단체장에게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  
② 추천시기는 년2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.

**제4조(대상자결정)** 수여대상자 결정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후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**제5조(증서수여)**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1호서식,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 
② 명예도민증서 수여시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

**제6조(대우)**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.

1. 지역문화행사와 도, 시군정 간담회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
2. 새충북, 도, 시군정보고서, 홍보책자 등 각종 도, 시군정소식지 제공
3.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
4. 각종 신문,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

제7조(권리의무)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.

1. 도유 및 시군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(감면)이용 또는 우선이용
2. 도, 시군으로부터 균등하게 각종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
3.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, 시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

제8조(취소)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는 이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## 명예도민증서

대한민국 충청북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○○○씨에게 충청북도 도민증서를 드리는  
영광을 가집니다.

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충청북도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.

서기 19 년 월 일

대한민국 충청북도

충청북도지사 ○ ○ ○ (인)

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BE IT KNOWN THAT :

As the Governor of Chung Cheong Buk Do Province and on behalf of the  
citizens,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

○ ○ ○

an Honorary Citizenship of Chung Cheong Buk Do. IN WITNESS WHEREOF, I  
have affixed my signature and seal of Chung Cheong Buk Do on the ○ day  
of the ○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ty ○

○ ○ ○

---

Governor of Chung Cheong Buk Do  
Republic of Korea